

(問) 火災豫防을 위한 安定點檢 및 指導啓蒙에 努力하시는 貴協會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

當 호필은 法上 特殊建築物로서 非常照明裝置를 設置하도록 되어 있으나. 이의 構造原理 및 設置方法에 대한 基準이 모호하여 아직껏은 正처 못하고 있습니다. 非常照明裝置에 대한 상세한 解說를 부탁드립니다.

(答) 火災로부터 人命安全 및 財産保護에 努力하시는 貴下께 眞心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.

不特定多數人이 出入하는 特殊建築物과 5層 이상의 高層建築物은 罹災시에 豫想되는 人命避難상의 混亂防止와 消火活動 및 人命救助에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建物內에 非常照明裝置를 設置하도록 建築法施行令 第134條(73.9.1 制定公布)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對象建物: 5層 이상의 建築物 또는 3層 이상의 特殊建築物(73.9.1 이후에 建築된 것에 限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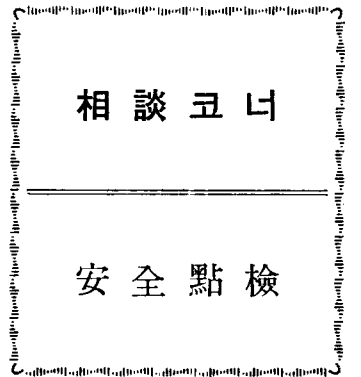
設置場所: 居室, 主된 複道 및 階段, 通路部分

構造: 火災에 대하여 安全하고 豫備電源에 의한 照明이 可能한 構造로 하되 바닥면에서 1룩스 이상의 照度를 維持하여야 할 것.

以上과 같이 同令에서는 非常照明裝置設置對象物 및 場所 등에 대해서 概括的으로 規定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設備構造 및 細部 施行規則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施行함에 있어 많은 問題點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

罹災시 人命避難活動 등을 위한 非常照明裝置 設備는 外國의 防火規定 등을 參照하여 볼 때 이들 設備에 使用하는 照明器具, 電氣配線 電源 등의 一般의인 構造原理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첫째: 照明器具
1. 照明器具(照明커버, 기타 照明器具에 附屬된 것을 포함)內의 主要한 부분은 不燃材料로 할 것.
 2. 照明器具는 白熱燈, 螢光燈 또는 水銀燈으로 할 것.
 3. 防電燈(螢光燈 또는 水銀燈)



相談 코너

安全點檢

의 安定器는 耐熱性 外函에 收容할 것.

- 둘째: 電氣配線
1. 電氣配線은 다른 電氣回路(電源 또는 誘導燈에 接續하는 부분을 除外)에 接續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도중에 一般人이 쉽게 電源을 遮斷할 수 있는 開閉器를 設置해서는 안된다.
 2. 照明器具의 救出線과 電氣配線은 직접 接續한 것으로 그 도중에 콘센트, 스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設置하여서는 안된다.
 3. 電氣配線은 耐火構造의 主要構造部에 埋設하거나 다음에 揭記

한 配線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防火措置를 講究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(金屬管工事 또는 可燒電線管工事に 의한 配線, 耐火構造의 바닥 혹은 壁 또는 防火門으로 區劃된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設置한 配線, 버스닥트 또는 MI 케이블을 使用한 配線).

- 셋째: 電源
1. 常用電源은 蓄電池 또는 交流 低壓屋內幹線에 의한 것을 使用할 것.
 2. 豫備電源은 蓄電池設備, 自家用發電設備 또는 非常專用受電設備로 할 것.
 3. 豫備電源은 常用電源이 끊어진 경우에 自動的으로 交替되어 接續되고 常用電源이 復舊된 경우에도 自動的으로 交替되어 復歸하여야 할 것.

4. 蓄電池를 豫備電源으로 使用할 경우에는 自動充電裝置, 時限充電裝置를 갖는 蓄電池로서 恒시 充電狀態를 維持할 것.

5. 常用電源 및 豫備電源의 開閉器에는 非常照明裝置用이라고 表示할 것.

6. 豫備電源은 20分 이상 계속하여 非常照明裝置를 點燈할 수 있는 容量이어야 할 것. 다만 높이 36m 이상 건축물의 豫備電源은 1時間 이상 所要電力을 供給할 수 있는 容量으로 할 것.

이상과 같이 非常照明裝置에 대한 一般의인 構造原理에 대하여 記述하였읍니다. 貴 호필은 上記한 構造의 非常照明裝置를 設置하여 罹災시 發生될 수 있는 人命避難의 混亂을 豫防하여야 되겠습니다.

趙 重 達
〈防災研究部 代理〉